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동아리연합회 공금관리세칙

[동아리연합회 세칙 제3호] [제정 2019. 06. 05. / 공포 2019. 06. 11.]

제 정 2019. 06. 05. <제 정>

제1장 총칙	1
제2장 공금 관리	1
제3장 공금 횡령 대응	1
제1절 통칙	1
제2절 진상조사위원회	2
제3절 사건 관계자 및 혐의자	2
제4절 사후 조치	3
부칙	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중앙동아리의 공금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중앙동아리 내부의 투명한 공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공금”이란 중앙동아리 내부의 자체재정 및 중앙동아리가 본회와 학교 당국으로부터 지급받은 활동지원금과 자치회비를 모두 포괄하는 자금을 말한다.
- ② “자체재정”이란 중앙동아리 내부에서 걷은 회비로 이루어진 자금을 말한다.

제3조(책임자)

중앙동아리 공금 책임자는 중앙동아리의 대표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대표자 외에 별도로 공금 관리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와 해당 관리자가 공동 공금 책임자가 된다.

제2장 공금 관리

제4조(의무)

- ① 중앙동아리는 해당 중앙동아리 회원들에게 회계 분기별로 결산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단, 회계 분기는 중앙동아리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 ② 중앙동아리의 공금 감사는 해당 중앙동아리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운용)

중앙동아리는 공금 운용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별도의 계좌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공금 횡령 대응

제1절 통칙

제6조(정의)

- ① 공금 횡령은 개인 또는 집단이 중앙동아리의 공금을 사적으로 가로채어 취득하는 일을 의미한다.

- ② 혐의자는 공금 횡령 사건의 피해 발생 주체로 신고되어 지목된 개인 또는 집단을 지칭한다.
- ③ 사건관계자는 제보자, 참고인, 증인, 해당 중앙동아리 회원 등 해당 공금 횡령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제2절 진상조사위원회

제7조(진상조사위원회)

- ① 공금 횡령이 의심되어 동아리연합회에 신고가 접수되면 동아리연합회장단은 신고 후 7일 이내에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한다.
- ②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동아리연합회장단으로 구성된다.
- ③ 진상조사위원회는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학교 당국의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사건 발생 중앙동아리, 혐의자, 사건관계자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요청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 ⑤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동안 협력 기관을 제외한 외부에 해당 사건 및 혐의자와 사건관계자에 대한 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8조(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진상조사위원회는 해당 공금 횡령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1. 사건 경위
- 2. 사건관계자의 진술
- 3. 사건 증거

제3절 사건관계자 및 혐의자

제9조(사건관계자의 권리)

- ① 사건관계자는 신상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사건관계자는 조사 진행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에 의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제10조(사건관계자의 의무)

- ① 사건관계자는 진술을 위증하지 않아야 한다.
- ② 사건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 외부에 발설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사건관계자는 혐의자 및 다른 사건관계자에게 보복 및 2차 가해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혐의자의 권리)

- ① 혐의자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 ② 혐의자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신상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③ 혐의자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제4절 사후 조치

제12조(변제)

- ① 횡령한 공금이 활동지원금이나 자치회비에 해당할 경우 횡령범인은 해당 금액을 7일 이내에 동아리연합회에 변제한다.
- ② 횡령한 공금이 자체재정에 해당할 경우 진상조사위원회가 사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중재하는 역할로서 변제 처리에 대한 회의를 주재한다.

제13조(징계)

- ① 혐의자의 공금 횡령 혐의가 확정되면 혐의자는 횡령범인으로 자동 전환되며 동아리연합회는 횡령범인에게 아래의 징계를 모두 부과한다.
 - 1. 동아리연합회 회원 자격 영구 박탈
 - 2. 사과문 게시
- ② 혐의자의 공금 횡령 혐의가 확정되면 해당 중앙동아리의 공금 책임자는 사과문을 게시한다. 사과문 미제출 시 해당 중앙동아리에 주의 1회를 부과한다.
- ③ 사과문은 혐의 확정 이후 48시간 이내에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며 동아리연합회는 해당 사과문을 동아리연합회가 관리하는 SNS에 게시한다.

부칙

본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